

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신설 2023. 8. 22.>

재활용부과금 [] 징수유예 [] 결정 [] 통지서
[] 분할납부 [] 거부결정
[] 징수유예 기간 연장

관리번호

성명			생년월일			사업자등록번호		
주소				전화번호				
상 호 또는 명 칭								
사업장 소재지								
사업의 종류				종목				
재활용부과금의 내용					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금액			
연도(분기)	납부번호	납부기한	금액					
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기간		20 . . .부터 20 . . .까지						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								
횟수	연도(분기)	납부번호	분할납부기한		분할납부금액			
거부결정 사유								
귀하가 20 . . . 신청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거부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								